

공사 계약서

1. 공사명 : 해저 4동 2차 옥외용 텐테이블 제작 및 설치
2. 공사장소 : LS전선 동해공장
3. 착공년월일 : 22년 12월 2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3년 7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백육십삼억오천칠백만원정 (₩ 16,357,000,000 / V.A.T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발주가격 : ₩ 14,870,000,000 (PO 4504035026)
 - V.A.T : ₩ 1,487,00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37,206,717 (V.A.T 별도)
6. 계약이행 보증금 : ₩ 1,635,700,000 [계약금액의 (10)%]
7. 선급금 : ₩ 3,271,400,000 [V.A.T포함, 계약이행증권, 선급금 이행 보증증권 제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지급, 당사 대금 지불 조건]
8. 중도금 : ₩ 11,449,900,000 [V.A.T포함, 중간보고 합격 통보 기준 을의 청구 접수 후 당사 대금지급 조건 기준 지급]
9. 잔금 : ₩ 1,635,700,000 [V.A.T포함, 최종보고 합격 통보 및 하자 보수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접수 후 당사 대금지급 조건 기준 지급]
10. 하자담보책임 기간 : 준공검사 완료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수행되며, 기간은 (1)년을 하자이행 보증기간으로 한다.
11. 하자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12.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13. 기타 :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공사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유첨 : 사양서 1부

2022년 12월 26일

(갑) LS전선주식회사

(을) (주)에스에프에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691번지

엘에스로127, LS타워 13-17 F

대표이사 김영민(인)

대표이사 구본규(인)

공사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공사/용역계약을 "을"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공사 및 용역을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을"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공사 및 용역을 도급받는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 받은 공사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을"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을"으로부터 공사 및 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양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을"이 단가를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공사 및 용역 계약서, 공사 및 용역 도급계약 일반조건, 사양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이행 보증금 등)

-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즉시 "갑"에게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계약이행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제5조(계약이행 보증금의 처리)

- ①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완료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 ① "을"은 착공전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 ① "을"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갑"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공정보고)

-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 및 용역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시 지체없이 공정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사기간)

- ① 공사착공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② 준공일은 "을"이 공사 및 용역을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선금)

-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이 선금 지급 전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증권, 선급금 이행 보증증권 제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의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멀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국내 환경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안전경영 방침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사내 환경안전규정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계약 수행중 "을"의 종업원에게 법에서 정한 환경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책임이 있다.
- ⑤ "을"은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갑"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⑦ "을"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⑧ "을"은 계약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갑"의 환경 경영에 위배하거나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
- ⑨ 계약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을"이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 ⑩ "을"은 "갑"으로부터 계상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 계약과 관련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상세기준 관련 고시 참조)
또한, 그 사용내역서를 관련 고시 별지 제 1호 서식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의 보호)

-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관련법령(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증급조치)

-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자신의 비용으로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후 "을"에게 구상 청구 할 수 있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 또는 사양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해비용은 "을"이 전적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성)

- ① 계약서에 기성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검사 합격 통보 후 계약상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부분사용)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대금지급)

- ① "을"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을"에게 공사 대금을 계약상 지불조건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지체상금)

- ① "을"은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 사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4조(하자담보책임)

- ① "을"은 공사의 하자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합격 통보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 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공사 및 용역 합격 통보일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동안 당해 공사에서 발생(또는 발견)되는 일체의 하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보수 불가시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25조(공사 및 용역의 하도급 등)

- ① "을"이 도급 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공사 및 용역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및 용역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④ "을"은 도급 받은 공사를 제1항에 따라 하도급 한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갑"은 "을"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비밀유지)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협의, 회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모든 자료와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 및 제반정보(이하 "기밀사항"이라 함)를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기밀사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을"은 기밀사항을 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로 철저히 유지 관리한다.
- ④ "을"은 기밀사항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또는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을"이 본 조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 등에 의하여 "을"이 제조한 제품을 "갑"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해제 또는 해지)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하여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 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단,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1."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때
 - 2."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4."을"이 파산, 청산, 해산, 회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
 - 5."을"이 "갑"에게 허위의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통보한 경우
 - 6."을"이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7."을"이 제27조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기타 "을"의 계약이행 정도, "을"의 재무/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 ②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해지의 효과)

- ① 계약은 제28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해지된다.
-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착공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해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지일까지의 공사비 집행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갑"의 검사 결과 해지일까지의 기성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을"은 기 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기성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도록 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채권양도)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의 의무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특허권 사용 등) "을"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 등을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3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해석에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35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LS전선에서 2022년 12월 26일에 전자서명하고 (주)에스에프에이가 2022년 12월 28일에 전자서명한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본 계약서에 대한 문의는 LS전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